

제 302 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1972. 10. 25.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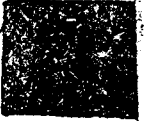
차 례

서울특별시
공보실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 고 시
 - 제 14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결정 3
 - 제 151 호 서울도시 계획사업시설변경 3
 - 제 152 호 배합사료 성분등록 4
- ◎ 공 고
 - 제 234 호 망우지구환지계획공람 4
 - 제 235 호 환지처분공고 5
 - 제 237 호 주거구역지정공고 5
 - 제 238 호 상수도공채원 리금상환공고 5
- ◎ 사 령 6
- ◎ 정 청 8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4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결정

-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을 도시계획법제 12조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	10	250	염리동 148-9	염리동 128-19	
변경	"	"	"	"	"	"	"	위치 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151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시설변경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일부를 도시계획법 제 12조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동 법제 25조 규정에 의거 시행할것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2.10.20.

서울특별시장

결정 고시 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2.10.20.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희동산 114 - 7 의 1 필지
- 2. 사업의종류 :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 연희동주택단지 (백순익)
시 행 면 적 : 12,393 평
- 3. 시행지의주소성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1-361 백순익
- 4. 사업의착수및준공 : 착수 - 68. 9.10.
준공 - 72.10.31.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번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된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7. 시설변경조서

가. 가 로 변 경

번호	류별	등급	폭원	연 장		기 종 점		면 적	
				변경전	변경후	기 점	종 점	변 경 전	변 경 후
1	소로	3	6	305	303	연회동산 115-18	연회동산 114-7	1,830	1,818
2	"	"	"	390	386	115-30	114-7	2,340	2,316
3	"	"	"	89	89	115-7	115-33	528	528
4	"	"	"	106	106	115-6	115-5	636	636
5	"	"	"	100	100	"	"	600	600
계				990	984			(1,780명) 5,929	(1,770명) 5,898

별첨 도면과 같음(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52 호

고시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1972.10.11.

서울특별시장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 료 의			사 료 성 분 의				유효기간		비 고
				종류	명칭	용도	최소량		최대량		부터	까지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7-40	서부배합사 료주식회사	마포구서교 동 371~10	정규봉	배합 사료	젓메기돼지 용배합사료	생후대략 2개월까지	아% 18.0	아% 2.0	야% 6.0	야% 9.0	1972 10.11	1974 10.10	신규
7-41	"	"	"	"	젓메기송 이·지 사료	생후대략 3개월까지	" 19.0	" 2.5	" 3.0	" 9.0	1972 10.11	1974 10.10	"

공 고

망우지구환지계획공람

◎ 서울특별시공고제 234 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망우(추가)토
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구획정리사업법

제 46 조 및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도서와 같이 성북구공능동 일부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 1 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것이며 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 합니다.

공 략 공 고 개 요

- 1. 사업명 : 망우(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 2. 사업집행지: 성북구공능동 일부
- 3. 시행면적 : 25 만평

1972.10.2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35 호

환지처분(화양토지구획정리지구)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별첨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되었기 동법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별첨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 1 파 및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972. 10.2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37 호

주거구역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주거지역중 주거구역지정을 건축법제 39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축과 및 성동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2.10.25.

서울특별시장

주거구역지정조서

성동구거여동지내 32,930.7 평방미터

- 1. 위 지정된 주거구역안에서 공지비율은 10분의 6 이내임.
- 2. 주거구역이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지구에 저축될때에는 동법제한 규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공고제 238 호

상수도공채원리금상환공고

서울특별시 제 1 회 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70 년도에 발행 매출한 시공채의 원리금을 다음에 의하여 상환 합니다.

- 1. 상환 공채명
서울특별시제 1 회 상수도확장사업공채
- 2. 상환일자
1972.11.6 일부터 원리금 일시상환
- 3. 시공채의 종류
가. 10,000 원권
나. 1,000 원권

4. 상환금 지급업무 취급기관
 한국상업은행 증권부
 한국상업은행 서울특별시 시금고
 업무부 (시청구내)

5. 기타 사항

가. 시 공채 원리금 청구시는 주민
 등록증과 인장을 지참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수도권
 업무과 또는 한국상업은행 증권부나
 시금고 업무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2. 10. 24.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사 령

◎ 1972.10.21.

도시가스 지방전기기사보 이.재.인
 사업소 1972. 12. 31 까지 연보과
 파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건축기사보 김.한.성
 중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기계기사보 홍.금.희
 자동차정비창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건축지원 배.석.중
 마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건축지원보 손.대.익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수의원 김.비.의
 보건소 서대문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수의원 김.기.근
 보건소 농정과 근무를 명함.

중부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정.영.자
 용산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 1972. 10. 23.

수산청이경국 행정주사보 정.동.백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충남서천군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 강.근.수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 파
 견 (72. 10. 21 - 72. 12.

16 까지)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 김.순.초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 파
 견 (72. 10. 21 - 72. 12.

16 까지) 근무를 명함.

이 문 회	전 진 자
<p>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용산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p>
김 광 복	김 정 자
<p>조건부 지방보건기사보에 임함. 서대문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임상병리)</p>	<p>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p>
김 회 태	김 순 규
<p>조건부 지방보건기원보에 임함.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윤 양 군	정 영 숙
<p>조건부 지방보건연구원에 임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p>
윤 결 중	박 숙 경
<p>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영등포 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김 명 준	공 혜 숙
<p>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서대문 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이 상 복	백 신 희
<p>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영등포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박 철	유 정 일
<p>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정 경 옥	<p>성동구수 지방행정서기보 영 등 만 도사업소 전라남도 진출을 명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윤 경 희	(정 정)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박 영 희	<p>1. 시보 제 298 호 (72. 10. 18) 에 제제한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63 호 광 고물단속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중 "가로 30 센치×세로 60 센치"는 "가로 60 센치 ×세로 30 센치"의 오식임으로 정정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서대문 병원 근무를 명함.</p>	김 은 태	<p>2. 농림 1162-2088(72. 10. 18)의거 사료성분 등록을 한 천일곡산주식회사분 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147 호의 기재사항 중 업무착오로 오기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함.</p>
<p>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박 명 숙	<p>2. 정정 내역 사료공장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2가 15번지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15번지 로 정정함. 끝.</p>